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재정법 개정(2014. 5. 28공포, 2015. 1. 1시행)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,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(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제4조

나. 예산조치 : '15 당초예산에 1억미만 반영되었음.

다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(2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2015. 5. 28 ~ 6. 17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대상 사무 없음.

(4)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”로 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보조금 지원 대상사업(제11조 관련)

사 업 명
1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1) 자연보호 자연정화활동사업 2.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 1) 사회단체협의회 지역사회발전사업 3.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1) 청소년 극기캠프교실 2) 청소년 안전문화지도 활동사업 4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1) 역량강화 교육사업 5.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1)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6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) 범죄예방 선도 및 보호활동사업 7.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1)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활동사업 8.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) 태극기 선양 및 각종사업 9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활동 1) 찾아가는 마을봉사활동사업 2) 중고물품교환판매소 운영사업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자원봉사단체의 지원)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1조(자원봉사단체의 지원) ------- ---------- ---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.